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남양지구(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 고시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
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
따라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(산업단지)관리기본계획
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8월 09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□ 관리기본계획 내용

○ 용도별 구획면적

(단위 : m²)

총면적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	비 고
280,120 (100)	133,730 (48)	8,877 (3)	74,898 (27)	62,615 (22)	

○ 유치 업종 : 붙임 참조

※ 열람장소 :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【051-979-5162】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 임 :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(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 1부. 끝.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

남양지구(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(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

I. 산업단지 개요

1. 명 칭 :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(산업단지)
2. 관리기관 :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(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9-2번지)
3. 소재지

소 재 지	면적(m ²)	비고
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일원	280,120	-

4. 조성목적

- 구역내 마천지구, 두동지구의 첨단생산기능 및 인접 마천산업단지와의 기능연계를 고려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
5. 추진경위

- '03.10.30 :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
(재정경제부고시 제2003-20호)
- '06. 7.20 : 실시계획 승인 신청(한국토지공사→재정경제부)
- '06.11. 3 :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
(재정경제부고시 제2006-43호)

6. 분양계획

(단위: m²)

구 분	총면적	분 양 가 능 면 적				조성 기간	사업 시행자	
		분 양	미 분 양					계
			조성	미조성	소계			
계	280,120	-	-	161,002	161,002	161,002	'07~'09 한국 토지 공사	
산업시설	133,730	-	-	133,730	133,730	133,730		
지원시설	8,877	-	-	8,877	8,877	8,877		
공공시설	74,898	-	-	18,395	18,395	18,395		
녹지구역	62,615	-	-					

- 공공시설용지 중 분양가능용지 : 하수처리시설 15,561m², 주차장 2,834m²

7. 입주계획

□□ 입주업체 수 및 분양면적

(단위: 개사, m²)

구 분	입 주 업 체 수				면 적			
	계	산업시설	지원시설	공공시설	계	산업시설	지원시설	공공시설
면 적	24 (23)	22	-	2 (1)	161,002 (158,168)	133,730	8,877	18,395 (15,561)

※ 입주업체수는 외국인투자지역(예정)을 제외

지원시설용지(8,877m²) 및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(2,834m²)은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 계획
(토지공사 자체매각)

□□ 시설별 세부내용

- 산업시설(133,730m²)
메카트로닉스(90,735m² 68%), 신소재(42,995m² 32%)
- 지원시설(8,877m²)
상업·업무시설용지(8,877m²,100%)
- 공공시설(137,513m²)
도로(33,381m², 24%) 주차장(2,834m², 2%), 공공공지(3,108m², 2%),
공원(4,631m², 4%), 녹지(62,615m², 45%), 하천(15,383m², 11%), 하수
처리시설(15,561m²,12%)

8. 입지여건

시설명	구분	기반시설 현황	확 충 계 획		
			사업기간	규 모	시행기관
도 로	기정	국도 2호선	-	-	-
항 공	기정	김해 국제공항 (접근거리 22km)	-	-	-
항 만	기정	부산항 (화물능력 54,975톤)	1995 ~ 2011	부산항 신항 (30선석) (460만TEU)	부 산 신항만(주)
용 수	기정	석동정수장 (Q=100,000톤/일)	-	-	-
하 수 처리장	신설	-	2008 ~ 2009	9,000톤/일	진해시

II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1.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

- 남양지구(산업단지)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(16,201m²)을 제외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2. 관리기본 방향

-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생산 및 인접 마천산업단지의 기능을 연계한 신항만 배후 생산기지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
- 지역경제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
- 지역소득창출 및 고용확대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을 집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3.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

가. 용도별 구역면적

(단위 : m², %)

총면적	산업시설 구역	지원시설 구역	공공시설 구역	녹지구역	비 고
280,120 (100)	133,730 (48)	8,877 (3)	74,898 (27)	62,615 (22)	

※ 지구단위계획구역 16,201m² 포함

- 지원시설 8,877m², 공공시설 7,324m²(주차장 2,834m², 도로 4,490m²)

나.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1) 산업시설구역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,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

련시설

2) 공공시설구역

-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
-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

다. 용도별구역 평면도 : 별첨 #1

4. 업종별 배치계획

가. 배치계획

(단위 : 개사, m²)

구 분		업체수	면 적	비 고
계		23	149,291	
산업 시설	소 계	22	133,730	
	메카트로닉스	16	90,735	일부 외국인투자유치 단지 예정
	신소재	6	42,995	일부 외국인투자유치 단지 예정
공공 시설	소 계	1	15,561	
	하수종말처리장	1	15,561	
	-	-	-	

※ 업체수는 분양결과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나. 배치기준

- 업종별 구분배치(한국표준산업분류)

업 종	입 주 업 종(한국표준산업분류)
	중 분 류
메카트로닉스	28(조립금속제품제조업) 29(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) 34(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)
신소재	27(제1차 금속산업) 31(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)

다.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 : 별첨 #2

5. 입주기준

가. 입주대상업종

1) 산업시설구역

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. 다만 중분류상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세분류시 악취유발업종[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313), 도금업(28922), 도장시설(공통시설) 및 VOCs 발생업종]은 입주를 제한한다.

2) 공공시설구역

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시설을 입주한다.

나. 입주자격

1) 산업시설구역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

2) 공공시설구역

-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지정용도에 한함)

다. 입주 우선순위

1순위 :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(경상남도, 진해시)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

2순위 : 경상남도 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

3순위 : 기타 남양지구(산업단지)로 본사를 이전코자하는 업체

4순위 : 남양지구(산업단지)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및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

라. 입주절차

-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공고 후 관리기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

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필지별 분양토지에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, 동 순위일 경우 1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첨단업종, 2차 무공해 업체, 3차 완제품 생산업체 순서로 결정하되, 또다시 동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Ⅲ. 사후관리계획

1. 분양용지관리
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,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한다.
-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(나대지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(입주계약 체결일)로부터 5년이 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.
-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.
- 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,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

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, 준공 불가능 인정, 사업 미착수, 사업의 휴지(休止)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.

-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, 수출,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2. 환경관리

-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.

3. 안전관리

-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.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, 공해,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.
-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4. 기반시설지원
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.

5. 분할 기준 면적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,650㎡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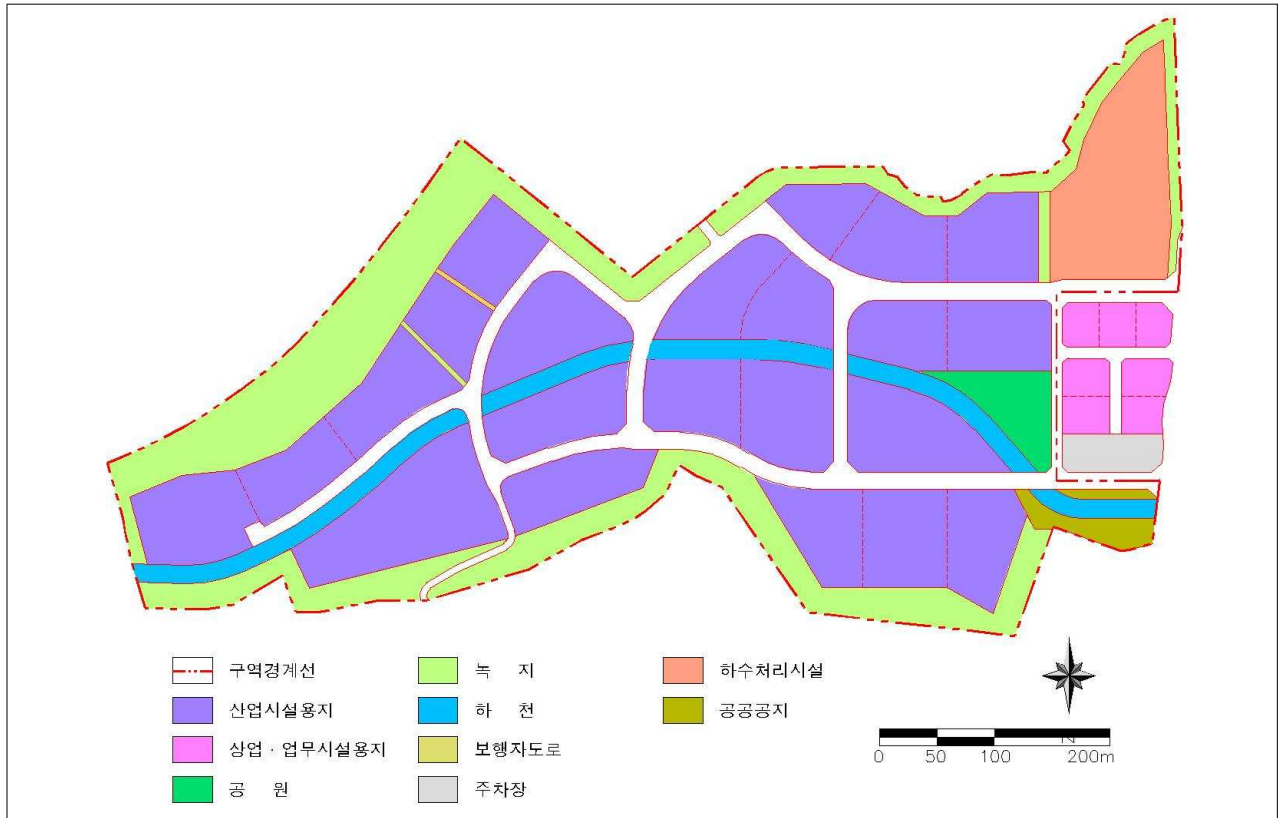
별

첨

1. 용도별 구역계획도

2.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

별첨#1. 용도별구역 계획도



별첨#2.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

